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6
----------	-----

발의년월일 : 2015년 4월 15일

발 의 자 : 서영진, 이창섭 의원(2명)

찬 성 자 : 김상훈, 박중화, 박기열, 강감창,
김태수, 최관술, 성중기, 우형찬,
유 용, 김선갑, 김생환, 조상호,
오승록 의원(13명)

1. 제안 이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14.1.28)으로 택시공영차고지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공영차고지의 범위에 택시공영차고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 가. ‘공영차고지’ 정의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버스 등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고지를 포함한다)를 추가함(안 제2조 1호)
- 나.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2호 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추가함 (안 제4조 1항)
- 다. 기타 상위 법령에 맞게 내용을 수정함(안 제4조 3항, 제7조 1호, 제11조 2항)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예산 조치 : 생략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조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 별첨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1호 중 “제72조 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를 “제72조 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로 한다.

제4조 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호 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제4조 3항 단서조항 중 “공영차고지 해당 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를 “공영차고지 해당 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제7조 1호 중 “특수여객 장의차량”을 “특수여객 장의차량, 택시”로 한다.

제11조 2항 중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와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 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p> <p>2. (생략)</p> <p>3. (생략)</p> <p>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p> <p>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사업자,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시설설치업체"라 한다)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 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의 내압용기 검사시설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2조(정의)-----</p> <p>-----</p> <p>1.-----</p> <p>-----제72조 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p> <p>-----</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p> <p>①-----</p> <p>-----</p> <p>-----,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호 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p> <p>-----</p> <p>-----</p> <p>-----</p> <p>-----</p> <p>-----</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③ 시장은 공영차고지 권역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공영차고지로부터 6km 이내에 노선의 기·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와 공영차고지 해당 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제7조(입주업체의 행위제한)</p> <p>1. 시내버스, 마을버스, 특수여객 <u>장의 차량</u>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p> <p>2. (생략)</p> <p>3. (생략)</p> <p>4. (생략)</p> <p>5. (생략)</p> <p>제11조(준용)</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u>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차고지</u> 용도로 매입한 토지와 무상으로 이관 받은 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 등 운영관리(부대시설 포함)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 ----- -----</p> <p>--<u>공영차고지 해당 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u>--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입주업체의 행위제한)</p> <p>1. ----- <u>장의차량, 택시</u> ----- -----</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제11조(준용)</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와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u> ----- ----- ----- ----- ----- -----</p>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기존 공영차고지 부지를 입체화(건물신축)하여 버스 및 택시 등이 활용하는 공영차고지 건설로 비용 발생

- 근거 : 택시발전법 제2조 제5호, 제7조 제2항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건설규모 : 1층 1,600㎡(버스), 2층 및 옥상 3,200㎡(택시)

○ 기간: 시행일로부터 5년(2015~2019년)

※조례개정 후 2015년도부터 비용은 발생하나 국비지원 미확보로 인해 추계에서 제외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6,256백만원(국비 1,877, 시비 4,379) *국비30%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입							
	소계(a)						
세출	○ 공사비		400,000	5,856,000			6,256,000
	소계(b)		400,000	5,856,000			6,256,000
□ 총 비용(b-a)			400,000	5,856,000			6,256,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국비			120,000	1,756,800			1,876,800
시비	지방세수입		280,000	4,099,200			4,379,200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400,000	5,856,000			6,256,000

5. 덧붙이는 의견: 시범사업으로 서초구 버스공영차고지(염곡동300-2)에 주차 전용건물을 신축할 경우 비용임

- 2013년도 공사비 가이드라인(기술심사담당관)의 주차장 공사비 적용

6. 작성자: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황훈 사업평가팀장 (전화 3702-1427)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건설규모

- 대지위치 : 서초구 염곡동 300-2(염곡동 공영차고지)
- 대지면적 : $9,371m^2$
- 도시계획내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자동차정류장,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설규모 : 지상2층, 연면적 $3,200m^2$
 - 1층 : $1,600m^2$ (버스), 2층 및 옥상(지붕 없는 주차) : $3,200m^2$ (택시)
 - 택시 300여대 수용(3~4개 업체 입주)
 - 산정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 공사비 산출 근거

- 2013년 에너지 절감형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비 가이드라인(기술심사담당관)

○ 상세내역

- 주차장 신축(규모 $5,000m^2 \sim 10,000m^2$) : $1,830\text{천원}/m^2$
[$3,200m^2 \times 1,830\text{천원} = 5,856,000\text{천원}$]
- 설계비(공사비 50억~100억, 3종. 상급) : 공사비 $\times 5.65\%$
[$5,856,000\text{천원} \times 0.0565 = 330,864\text{천원}$]
- 감리비(공사비 50억~100억, 3종) : 공사비 $\times 1.18\%$
[$5,856,000\text{천원} \times 0.0118 = 69,100\text{천원}$]
- ※ 공사비 합계 : $5,856,000 + 330,864 + 69,100 = 6,255,964\text{천원}$
[6,256백만원]